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6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원더풀 복지봉사단 운영 규정

2. 개정이유

- 복지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비 및 식비 지원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정립에 따라 일부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제14제1항제3호 : 활동비 및 식비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
 - “중식비,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” 를 “활동비는 현장 봉사활동 및 교육, 간담회 등 참여 시 지급하며, 지급 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8조를 준용. 단, 식비는 활동비 외 별도지원” 으로 한다.
- [별지 1,2호 서식] 의 “회원가입 신청서” 를 “단원가입 신청서 “로 한다.

제20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원더풀 복지봉사단 운영 규정」 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0월 20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

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7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보수 규정

2. 개정이유

- 업무 특성상 개인부담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제23조(수당의 지급) 및 별표 6(수당지급 기준표) 개정
 - “특정업무수행경비” 지급조항 신설(8만원) : 예산, 결산, 계약, 감사, 노사, 보상, 안전보건관리업무, 경영평가실무담당 직원(국장 이하)

제21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보수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0월 20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 현

